

##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

### 1.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10명중 3명은 성인 웹사이트 이용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ID를 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전국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인터넷 사용자 2,73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생성기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제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ID를 도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9%인 846명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중학생은 42.8%, 고교생은 52.4%, 대학생은 3.4%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 2. 시사점

현행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를, 동조항 제9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62조 제6호에서는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조(本條)의 정보 및 비밀은 해당인의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생성기를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밖에 사안의 신분도용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위반으로 동법(同法) 제62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분도용에 대하여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바, 주민등록제도의 입법목적은 행정사무처리의 편의와 정보주체의 생활편익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데 있는 까닭에 신원확인방식으로 민간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업체들이 회원가입을 위한 등록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대부분이 필수기재항목으로 기재토록 하는 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 하나의 코드에 수록된 기본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유출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전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관리·사용의 적정 제한이 요구된다고 보이며, 따라서 개인정보수록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을 식별해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이에 의해 침해되는 개인의 인격권을 형량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이용에 제한과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을 구체화하는 암호기술의 활용방안이나, 전자추적방지기능을 탑재하고 개인정보보호장치를 내장한 전자서명이나 IC카드에 의한 전자인증을 주요한 대체적 신원확인수단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자서명은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상공간에서 민원인에 대한 신원확인방식이며, 국가적 차원의 공공부문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억지(抑止)하면서 본인확인의 무결성(無缺性)을 추구하므로, 이와 같은 해결방안은 인터넷 음란사이트의 이용에 있어 청소년들의 주민등

록번호생성기에 의한 신분도용문제 등의 해소에도 도움을 주리라 예상된다. 정보주체가 정보의 유통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기술상의 여과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유에서 그러하다.

<참고자료>

[1] 문화일보 2003년 11월 13일자 26면 기사

(이민영 연구원, 570-44083, mylee@kisdi.re.kr)